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 시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도시텃밭조성, 농업 지원센터 설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2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청 소속 기관 중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공무원 2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

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소 요 비 용 : 1,200천원/년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비용
계		1,200천원
예산과목	○예산명 :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위원참석 수당) - 산출기초 : 12명×10만원/2시간이상 =1,200천원	1,200천원